



제 420회 국회(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의 문화유산 정보 접근성 향상 지원 >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05호)

2025. 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장애인의 문화유산 정보 접근성 향상 지원(안 제15조의3제1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4. 11. 27.

다. 회 부 일: 2024.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조약인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문화생활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제1항).

Ⅲ. 검토의견

1. 장애인의 문화유산 정보 접근성 향상 지원(안 제15조의3제1항)

가. 개정안 요지

- 국가유산청장 등은 장애인이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화면해설 및 폐쇄자막 등의 보조서비스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15조의3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u>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 ----- <u>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화면해설, 폐쇄자막</u>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2006년에 마련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문화와 정보, 교육, 기술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협약의 제30조는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①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 향유, ②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 향유, ③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문화유산과 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대해서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¹⁾.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법 제24조 제2항),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으로 규정하고(시행령 제15조 제2항),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한편, 현행법 제11조는 국가유산청장은 국민이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고²⁾, 동법 시행령 제7조는 문화유산정보체계는 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자료, 문화유산 조사·발굴 및 연구자료 및

조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①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진 등 해당 문화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을 구축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국가유산청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³⁾.

○ 그런데, 현행법은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유산 정보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부 지원 사업은 문화유산 시설의 무장애공간 조성 등 장애인의 문화유산 시설 접근성 개선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이 문화유산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문화유산 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화면해설, 폐쇄자막 및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여 장애인의 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문화유산 조사·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문화유산으로서의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국가유산청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하고 장애인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일반 국민이 개정 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 제목을 문화유산 외에 “문화유산 정보”를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에 대해 수용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1

유사입법례

법률명	조 문
전기통신사업법 (제18992호)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0511호)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0151호)	제22조의10(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 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u>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